

2026년 「경기 RE100 선도사업」 지원계획 공고

「경기 RE100 선도사업」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9일

경기도지사

□ 사업목적

-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RE100 선도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활성화 도모
- 재생에너지 집적화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선도모델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및 기업 RE100 지원

□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6. 3. 19.(목) ~ 2026. 4. 2.(목)
- 접수마감 : 2026. 4. 2.(목) 18:00 限
- 접수방법 : 사업자 → 시·군 접수 → 도 접수(공문, 제출서류)
 - ※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1)시·군 공문 발송 및 2)경기도청(에너지산업과)에 서류(책자, USB) 방문제출이 모두 이행된 경우에 한함.
 - ※ 접수 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 사유이므로, 제출 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
- 제출서류 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협약서 등 요구서류를 책자로 편철하여 10부(원본 1, 사본 9) 및 USB 1개 제출
 - ※ 구비서류 포함 제출(붙임참조)

○ 문의처

기관명	부서명	전화번호	비고
경기도	에너지산업과(기업RE100팀)	031-8008-6019	-

□ 신청자격

- 시·군, 공공기관, 민간법인(공고일 기준경기도 소재 사업자 / 단독 또는 컨소시엄)
 - 사업대상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

- 지원제외 대상(사업 참여제한)
 - 공고일 기준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·상실 중인 사업자
 - 공고일 기준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,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기간인 경우
 - 경기도 외 소재 사업자(경기도 소재 사업자와 컨소시엄은 신청 가능)
 -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
 - 공공건축물의 경우, 에너지 분야 관련법(규정) 설치의무 대상시설
 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(국비, 도비 등) ▶ 단, 동일 사업지역 내 추가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신청 가능

□ 지원금액 : 1,500백만원(도비)

□ 지원내용

- ‘대규모’, ‘신산업’ 2개 분야 설치비. 총사업비의 최대 30% 지원

구분	주요사업 내용	지원내용
대규모 분야	재생e 집적화 및 기업 RE100 지원	- 경관 개선형 재생e 집적화를 위한 설비 - 지역 맞춤형 재생e 확산 선도모델을 위한 설비 - 분산e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(ESS), 에너지관리시스템(EMS), 전기차충전시설 및 ICT 활용 융복합 사업* 등 * 가상상계거래(VNM), 가상발전소(VPP), V2G, 수요자원거래(DR) 등
신산업 분야	재생e 융복합 등 혁신 사업 확산 모델	

※ (대규모 분야 신청요건) ① 재생e 설비 1MW 이상 집적화 및 지역상생 ② 기업의 RE100 이행지원

□ 사업계획 작성 기준

- 시공기준 : 관련법령 및 한국에너지공단 관련 규정 등 준수
 - 『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』 등 관련 규정 준용
- 제품기준 : 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KS인증 제품이어야 하고, KS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
- 단가기준 : 세부사업 내역서 별도 제출(사업비 적정성 검토)
 - * 본심사에서 사업비 최종 결정 / 제품은 조달청 및 물가정보 기관 등의 단가 이하

□ 심사방법 및 절차

- 선정절차 : [1차] 서류검토(사전검토) → [2차] 본심사
- [1차] 서류검토 : 경기도(에너지산업과) 자체적으로 신청서류 검토
 - 적용단가 적정 여부, 시공기준 적합 여부, 사업비 구성 적정 여부 등
- [2차] 본심사 : 선정위원회(에너지분야 전문가 등 7명 내외) 구성하여 평가
 - 사업 신청자별 사업계획 발표, 질의·응답 및 심의(대면)

《 본심사 일정 및 방법 》

- 일 시 : 2026. 4월 중(시간 및 장소 별도공지 예정)
- 발표내용 :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(별도서식 없이 PPT 작성 발표)
- 발표자 :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

□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: 100점(정량평가 40점, 정성평가 60점)

- 선정기준 :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을 각각 제외하고 합산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획득한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
【정량평가 및 정성평가】

- 정량평가(40점) : 5개 항목(사업비 부담비율 등 참여의지)
 - 도비지원비율(10점), 시군비부담률(10점), 자비부담률(10점)
 - 사업지역 시·군 규제등급(5점), 재정자립도(5점) * 시군별 점수 차등 부여

《 시군별 차등 사항 》

1) 규제등급

구 분	해당 시군	점수
1등급	가평군, 광주시, 남양주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양평군, 여주시, 연천군, 이천시, 파주시, 포천시	5
2등급	고양시, 과천시, 구리시, 김포시, 시흥시, 안성시, 용인시, 의왕시, 의정부시, 하남시	3
3등급	광명시, 군포시, 부천시, 성남시, 수원시, 안산시, 안양시, 오산시, 평택시, 화성시	1

2) 재정자립도

구 분	해당 시군	점수
1그룹(40 ^{초과} ~)	화성시, 성남시, 용인시, 하남시	1
2그룹(30 ^{초과} ~40 ^{이하})	과천시, 수원시, 평택시, 의왕시, 안양시, 김포시, 이천시, 고양시, 시흥시, 안산시, 광명시	2
3그룹(25 ^{초과} ~30 ^{이하})	광주시, 오산시, 남양주시, 안성시, 군포시, 부천시, 구리시	3
4그룹(20 ^{초과} ~25 ^{이하})	파주시, 양주시, 여주시, 의정부시	4
5그룹(~20 ^{이하})	포천시, 연천군, 가평군, 양평군, 동두천시	5

※ (출처) 2024년 재정자립도(결산기준), 지방재정 365포털(www.lofin365.go.kr)

○ 정성평가(60점) : 5개 항목(에너지자립 효과 등 사업성과)

- 사업 효과성(15점), 사업수행 기술능력·전문성(15점)
- 사업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(10점), 사업계획서 완성도(10점), 지역사회 공헌도(10점)

【가점】

- 주민체감형 선도사업(5점) :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및 분산에너지 활용 선도사업

【감점】

- 사업변경 등(-15점) : 사업대상지 변경 또는 사업비를 반납한 수행기관*

최근 3년간 사업 변경/반납 건	1회	2회	3회 이상
점수	-5	-10	-15

* 시설 등을 실질적으로 주관(운영·관리)하는 기관

□ 보조금 회수

-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폐업, 이전 등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을 미운영(철거) 시 운영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

※ 보조금 반환액 = 보조금 지원액 × ((60개월-시설 운영개월 수)/60개월)

- 운영(사용)기간은 시·군 준공검사 실시 후 합격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미운영(철거)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
-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

-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
 - 천재지변 등 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사업 신청 시 사업 참여 및 보조금 반납확약서는 신청기관 모두 포함하여 작성 후 제출
- 사업 주관기관은 실질적으로 시설 등을 운영·관리하는 기관임
- 사업대상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
- 사업대상지 소유자가 공공기관으로, 대상지를 민간에 대여(임대)하는 경우에는 소관 재산관리부서의 동의서(공문 첨부) 제출
- RPS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, 도비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(REC) 발급받아 회수함
- 지원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경우, 도비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사업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
- 선도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, 도비 지원을 취소 및 환수하며 향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선도성을 훼손하는 경우 도비 지원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음
- 부정수급 행위 시 「지방보조금법」 등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, 제재, 벌칙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사업 관련 자료제출 및 현장 확인(운영실태 등)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교부결정 이후 경기도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음(해당 보조금(이자포함) 반납)
- 법령, 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(시설 설치·운영 포함)하여야 함
- 사업자는 「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」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(총사업비 미포함, 자부담)
- 공고문 미숙지, 접수 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, 요구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 사유이므로 유의하여 신청
- 시장·군수는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보조금법」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, 「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경기도에 제출
- 본 사업의 추진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- 붙임 1. 세부 추진일정 1부.
 2. 평가표 1부.
 3. 사업신청서 서식 1부.
 4. 사업계획서 서식 1부.
 5. 사업 참여 및 보조금 반납 협약서 1부.
 6. 사업대상지 시설물(토지·건축물) 사용동의서 1부. 끝.

【붙임 1】

경기 RE100 선도사업 세부 추진일정

추진단계	세 부 추 진 사 항	추진일정
사업 공고	▶ 사업 공고(홈페이지, 공문 등)	'26. 3월
↓		
신청서 접수	▶ 신청서 접수	'26. 3월
↓		
[1차] 서류검토	▶ 단가기준, 시공기준, 기대효과 등	'26. 4월
↓		
[2차] 본심사	▶ 선정위원회 운영(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) - 신청자 발표 및 질의답변, 사업계획 심의	'26. 4월
↓		
대상사업 선정	▶ 선정위원회 평가결과 반영	'26. 4월
↓		
시군 예산 확보	▶ 해당 시·군별 사업예산 확보(추경예산편성)	시·군별 적정시기
↓		
사업비 교부	▶ 도비 교부(도→시군, 자치단체자본보조)	시·군별 적정시기
↓		
사업 추진	▶ 사업 추진(착공)	사업비 교부 후

※ 상기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【붙임 2】

경기 RE100 선도사업 평가표

(사업명 : / 신청기관 :)

구 분	평가 항목							점수
정량평가 (40점)	▶ 도비 부담율(10점) : 도비 대비 상한비율(도비요청비율/도비상한비율)							
	구분 (%)	60 미만	60이상 ~ 70미만	70이상 ~ 85미만	85이상 ~ 95미만	95이상 ~ 100미만	100	
	점수	10	9	8	7	6	5	
	▶ 시·군 부담비율(10점) : 도비 대비 시·군비 참여 비율(시·군비/도비)							
	구분 (%)	100 이상	80이상 ~ 100미만	60이상 ~ 80미만	40이상 ~ 60미만	20이상 ~ 40미만	20미만	
점수	10	8	6	4	2	0		
▶ 자부담 비율(10점) : 도비 대비 자부담 참여 비율(자부담/도비)								
구분 (%)	100 이상	80이상 ~ 100미만	60이상 ~ 80미만	40이상 ~ 60미만	20이상 ~ 40미만	20미만		
점수	10	8	6	4	2	0		
▶ 시·군별 규제등급(5점)								
▶ 시·군별 재정자립도(5점)								
정성평가 (60점)	▶ 사업 지속가능성(10점) ○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 확장성							
	▶ 사업계획서 완성도(10점) ○ 사업계획서의 논리성, 체계성, 구체성							
	▶ 사업 효과성(15점) ○ 사업완료 후 전력생산 및 소비감축 효과							
	▶ 사업수행 기술능력·전문성(15점) ○ 시설설계·인허가·시공·수익창출·효율개선·에너지절감 노하우 등							
	▶ 지역사회공헌(10점) ○ 성과가 해당지역에 환원되어 지역사회 발전 공헌정도 등							
가점(5점)	▶ 주민체감형 선도사업 가점(5점) → 정성평가 ○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및 분산에너지 활용 선도사업							
감점(-15점)	▶ 시·군별 사업변경 등 감점(-15점)							
점수합계	합 계	점	정성+정량	점	가점	점	감점	점
평가의견								
사업비조정	총	원 (도	천원 / 시군	천원 / 자부담	천원)			
평가일 : 2026. . .								
평가자 : 소속			성명			(서명)		

참 고

경기 RE100 선도사업 평가기준(정성평가 및 가점)

○ 평가기준

항 목	평 가 기 준	배점
사업 지속가능성	-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 확장성	10
사업계획서 완성도	- 사업계획서의 논리성, 체계성, 구체성	10
사업효과성	- 사업완료 후 전력생산 및 소비감축 효과 등	15
사업수행 기술능력, 전문성	- 시설설계 노하우 등 기술능력 - 사업관련 인허가·시공·수익창출·효율개선·에너지절감 노하우 등 사업 전반의 전문성	15
지역사회 공헌도	- 성과가 해당지역에 환원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되는 정도 - 지역사회 공헌 세부내용의 다양성, 체계성, 구체성 등	10
주민체감형 선도사업	-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및 분산에너지 활용 선도사업	5

☞ 측정방법 : 평가점수는 아래 조건표를 참고 하여 숫자로 작성

【평가항목별 : 수(100%), 우(80%), 미(60%), 양(40%), 가(20%) 5단계로 평가】

배점한도	수	우	미	양	가
5점일 경우	5	4	3	2	1
10점일 경우	10	8	6	4	2
15점일 경우	15	12	9	6	3

【붙임 4】

경기 RE100 선도사업 계획서

사업목적(배경, 필요성 등)

-
-
-

사업개요

- 사업명 :
- 사업기간 :
- 사업비 : 000백만원(도비 000, 시비 000, 민간 000)
- 주관/참여 : /
- 사업내용
 -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

소요사업비 및 재원확보 방안

사업내용	소요예산(백만원)					재원확보
	계	도비	시군비	민간	기타	
계						
○						
○						

추진체계

-
-

□ 추진일정

- '26. 0월 :
- '26. 0월 :

□ 기대효과

-
-

□ 사업별 주요 내용

구 분	주요내용	소요예산
발전시설 (설비별로 작성)	[사업개요] ○ ○ [기대효과] ○ ○	00백만원 도비 00 시군 00 자부담 00 기타 00
지역사회 공헌	[사업개요] ○ ○ [추진방법] ○ ○	

□ 사업 대상지 일반현황

- 위 치 :
- 면 적 :

전경사진	위치도

경기 RE100 선도사업 계획서 작성방법

□ 사업목적

-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적 기재

□ 사업개요

- 단위사업별 사업내용(위치/사업기간/사업비/부지면적/시설규모/운영주체 등) 기재
- 사업규모(시설규모 등) 선정하고 산출근거 기재
 - 에너지 생산 가능성, 생산에너지의 활용 가능성 등 감안하여 규모 선정
- 시설 설치 및 설치 후 운영계획(운영주체, 운영조직 등) 기재

□ 소요사업비 및 재원확보 방안

- 단위사업별 소요예산과 산출근거 기재
- 재원 분담방안과 재원 확보방안을 세부적으로 기재
- 소요예산의 투자계획 기재
-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예정액을 명시

□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

- 사업시행 체계 및 준공 후 시설 운영관리 체계(주체, 역할 등)를 기재
 - 사업시행주체와 역할을 기재하되, 주민/민간사업자 등의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참여 주체별 역할을 기재
-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방안 등 수용성 확보 방안 기재
- 단위사업별 추진일정(타당성조사, 기본계획수립, 기본설계, 실시설계, 인허가, 공사 착공, 시운전, 준공 등)을 기재
- 사업비 정산 책임은 해당 시군에 있음을 표기

□ 기대효과

-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경제적, 사회적 효과를 총괄적으로 기재
- 단위사업의 시설 설치비용, 운영비용, 생산 에너지 판매비용 등 경제성을 분석 기재
- 주민 직·간접이익 창출, 일자리 창출 등 단위사업의 기대효과를 분석 기재 등

【붙임 5】

사업 참여 및 보조금 반납 협약서

사업명			
주관기관		총괄책임자	

위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「경기 RE100 선도사업」 계획서의 사업 내용에 동의하며, 본 사업이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계획서에 정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아래와 같이 사업비를 출연할 것을 약속합니다.

또한 사업의 선도성 훼손, 시설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시설 미운영(철거)* 등 보조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.

【사업비 출연계획】

합계	시·군	자부담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 출연계획			
		주관기관	참여기관명	참여기관명	참여기관명

- ※ 사업비 출연계획은 도비지원 비율이 조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
- ※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 교부 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
- * 보조금 반환액 = 보조금 지원액 × ((60개월-시설 운영개월 수)/60개월)

2026년 월 일

(주관·참여기관명)

(대표자)

_____ (인)

_____ (인)

경기도지사 귀하

【붙임 6】

사업대상지 시설물(토지·건축물) 사용동의서

신청사업 정보	사업명	
	사업내용	
	대표자	
사업시설 정보	소재지	
	주용도	(면적 :)
	지목	
	소유자	
	동의기간	0000년 00월 ~ 0000년 00월 (00년00월)

○ 사업시설 소유자

본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「경기 RE100 선도사업」에 참여하는 신청자에게 본인 소유의 시설(토지·건축물)을 사용에 동의하고 확약합니다.

성명 : _____ (인) 성명 : _____ (인)

○ 사업신청 대표자

본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「경기 RE100 선도사업」에 참여하고자 사업대상지 시설(토지·건축물) 소유자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약합니다.

성명 : _____ (인) 성명 : _____ (인)

2026년 월 일

경기도지사 귀하

※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해당부서 사용동의 공문 첨부, 민간시설의 경우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